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8.

부천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성심고가 옆 공영주차장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

다. 기초금액: 금25,3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개요(현장 상황에 따라 물량은 증·감 될 수 있음,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
532ton	- 폐콘크리트: 332ton - 건설폐재류: 179ton - 혼합건설폐기물: 21ton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8. 19.(수) 10:00~2026. 8. 25.(화) 10:00

바.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8. 25.(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천시** 또는 **시흥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춘 업체**

나. 공동도급 불허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용역 수행금액의 책정기준

구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용역비	폐기물 운반·처리비	거래실례가격	

4. 전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전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전적상대자 결정방법

-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 나. 예정가격 결정: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전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전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같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부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마.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주차정책과	☎ 032-625-4771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 032-625-2657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